

식 물 방 역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2023. 11.

농 립 축 산 식 품 부
(식량산업과)

1. 개정이유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른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상 처리 및 입력 사항 등 식물방역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식물통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될 사항(병해충 발견·발생, 예찰, 역학조사, 방제 및 검역 등에 관한 정보,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및 모니터링에 관한 정보 등) 구체화(안 제5조의3제1항)

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식물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 즉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도록 규정(안 제5조의3제2항)

다.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의3제3항)

라. 식물방역법상 약어(지방자치단체장)와 일치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안 제5조의3제1항(개정안), 제8조제6항, 제35조제1항, 제37조의7제1항, 제38조의8제6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약어가 식물방역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되어있고, 시행규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되어 있어 용어 일치 위해 관련 규정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 정보 및 병해충의 발견 또는 발생에 관한 업무
2. 법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검역·검사 시 발견된 병해충에 관한 사항
3. 법 제30조의2에 따른 발생 신고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에 따른 방제에 관한 업무
5. 법 제31조의5에 따른 분포조사 및 법 제33조에 따른 예찰에 관한 업무
6. 법 제31조의6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
7. 「산림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찰, 방제명령 및 방제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식물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 입력을 요청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은 입력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에 즉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제37조의7제1항 및 제38조의8제6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조의3(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 정보 및 병해충의 발견 또는 발생에 관한 업무</u> <u>2. 법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검역·검사 시 발견된 병해충에 관한 사항</u> <u>3. 법 제30조의2에 따른 발생 신고에 관한 사항</u> <u>4. 법 제31조에 따른 방제에 관한 업무</u> <u>5. 법 제31조의5에 따른 분포조사 및 법 제33조에 따른 예찰에 관한 업무</u> <u>6. 법 제31조의6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u> <u>7. 「산림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찰, 방제명령 및 방제 등에 관한 사항</u> <u>8. 그 밖에 식물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u>

	② <u>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 입력을 요청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은 입력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에 즉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u> ③ <u>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u>
제8조(식물검역관의 자격 및 선발 절차 등) ① ~ ⑤ (생략)	제8조(식물검역관의 자격 및 선발 절차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소속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이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 신분변동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알려야 한다.</u>	⑥ <u>지방자치단체장은</u> ----- ----- ----- ----- ----- ----- -----.
⑦ ~ ⑧ (생략)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35조(수출 식물등의 검역 신청) ① <u>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식물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검역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이 정한 식물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u>	제35조(수출 식물등의 검역 신청) ① ----- ----- ----- ----- ----- ----- -----

치단체 식물검역관을 둔 <u>지방자치단체의 장</u>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37조의7(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① 농촌진흥청장, <u>지방자치단체의 장</u> 및 검역본부장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이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7조의8(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① ~ ⑤ (생략) ⑥ <u>지방자치단체의 장</u>은 소속 식물방제관이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 신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생략)	-----<u>지방자치단체 장</u>에게-----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의7(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① ----- <u>지방자치단체장</u> ----- -----.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의8(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① ~ ⑤ (생략) ⑥ <u>지방자치단체장</u>----- -----. ⑦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연락처	(044) 201 - 2984, 2985